

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

제9조 (계약 목적)

-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(보호자)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(이용)계약’(이하“계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② 계약은 센터와 이용자가 제공(이용)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(이용)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제10조 (급여계약 등)

-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
-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.
 1. 계약 당사자
 2. 계약기간
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
 4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
제11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7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

다.

1. 이용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 외의 부당한 ‘급여 외 행위’요청이 있는 경우
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3. 센터 장기요양요원에게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
4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때
5.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12조 (신원인수인의 권리)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- ① 서비스 제공센터를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. 단 계약기간 중에는 최소 7일 이전에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센터에서 수집, 관리하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③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계획과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④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변경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④ 이용자의 건강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정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제13조 (신원인수인의 의무) 서비스 이용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한 인수인(보호자)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
-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- ②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, 재산상의 분실, 파손,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.
- ④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.
- 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.

제4장 서비스 이용료

제14조 (이용료)

- ① 이용자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라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

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.

④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
④ 매년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한다.

제15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3.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
4.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
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.
2.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.
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,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16조(이용료 납부)

①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7일 내에 정산하고 이용자(보호자)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.

②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는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(보호자)의 요청에 따라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

③ 이용자(보호자)는 그 달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용자(보호자)의 납부방법 변경 요청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.

⑤ 센터는 이용자(보호자)가 납부한 비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발급한다.

◆ 2023년도 수가 변경사항 안내 ◆

» 수가변경 사유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

(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, 제18조 방문요양 급여비용, 제25조 방문목욕 급여비용)

» 시행시기 : 2023년 01월부터

» 2023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» 2023년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시 간	금액(원)	시 간	금액(원)	시 간	금액(원)	시 간	금액(원)
30분이상	16,190	60분이상	23,480	90분이상	31,650	120분이상	40,280
150분이상	46,970	180분이상	52,880	210분이상	58,930	240분이상	65,000

» 2023년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

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차량 내 목욕)	82,16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(가정 내 목욕)	74,07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안 한 경우	46,250

» 수급자 자격 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생활수급권자	0%
기타 의료수급권자 ·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 질환자) ·저소득층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6% 9%